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(안)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및 제출일자 : 포항시장(2024. 11.08.)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2일

다. 상정일자

❍ 제321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-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(2025. 02. 12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남구산업과장)

가. 제안이유

❍ ㈜케이에스파워로 부터 오천읍 진전리 9필지 공유재산(임야)내 풍력발전단지 건설목적 대부 신청이 있어

❍ 「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33조 (영구 시설물 축조)에 의거 사전 포항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❍ 위 치 :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(9필지)
(산6-1, 산27, 산31, 산18, 산22, 산 22-1, 산22-2, 산22-3, 산38-2)

❍ 시유임야 대부면적 : 91,789㎡

❍ 주요시설물

■ 풍력발전기 8기, 관리동 1식, 진입도로 1식

※ 발전기 : 지주(타워) 높이120m, 회전 날개수 3개 (길이 80m)

❍ 사 업 비 : 1,450억원

❍ 사업기간 : 착공일로부터 2년

❍ 사업시행자 : ㈜케이에스파워

다. 향후추진계획

❍ 2025. 09 : 건설공사 착공

❍ 2027. 10 : 사업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

3. 제안근거

❍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(공유재산의 임대 등)

❍ 「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3조(영구시설물 축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종율)

❍ 본 동의안은 ㈜케이에스파워로부터 오천읍 진전리 산31번지 일원 공유재산(임야)내 풍력발전단지 조성목적 대부 신청이 있어 「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33조(영구시설물 축조) 규정에 따라 사전 포항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,

❍ 주요내용으로는 풍력발전기 8기, 관리동, 진입도로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해 공유임야 91,789㎡를 대부할 계획임.

❍ 종합검토 결과,
풍력발전사업은 에너지원의 다양화,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, 환경친화적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등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효과도 있으나,

❍ 발전시설 설치 시 산림 훼손 및 산지 토사 유실로 인한 상수도 오염 등의 피해와, 상업 운전 시 소음 및 전자파 등의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,

❍ 산림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재해 방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, 또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질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.

❍ 한편, 사업 추진 절차의 엄격한 준수와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고려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6. 토론의 요지

❍ 실질적인 공공기여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보고할 것을 주문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